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16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의 제조업자등 행정제재처분 내역 제공 요청 근거 신설	3

I. 개요

1.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1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27.
- (3) 회 부 일 : 2026. 3.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

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의 제조업자등 행정 제재처분 내역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해당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요청을 한 자에게 해당 내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u>제조업자등</u> 또는 <u>의약품관촉영업자와 수입자</u> 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 ----- <u>제조업자등</u> ----- ----- ----- ----- ----- ----- ----- ----- ----- -----.

만, 새로운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관측영업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
는 제외한다)와 수입자가 영업을 승
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 설>

<신 설>

~~-----제조업자등(상속에 의
한 지위 승계는 제외)이-----~~

② 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
위를 승계받으려는 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는 해당 제조
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
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내역

2.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내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
류를 발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9조의2¹⁾는 제89조²⁾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있음.

1) 「약사법」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와 수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약사법」

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자는 제외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89조의2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입자: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약품 판매업자: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제4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
2.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

□ 그런데, 양수인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³⁾’를 포함하도록 함⁴⁾⁵⁾.

현재 행정청은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확인서를 검토하여 기재가 누락된 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락된 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수인이 자신에게 승계되는 제재처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청에게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내역 및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현재 하위법령에 따라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을 의결하여 1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는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약사법」 제89조의2에

3) 최근 1년간 행정제재처분의 내역 및 진행 중인 절차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임.

4) 지위승계신고서 서식은 p.9 이하를 참조.

5)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서식인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 서식(p.11 참조)은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다만, 안 제89조의2제2항제1호는 양수인이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내역’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승계 대상이 되는 제재처분의 내역만을 제공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양수인·양도인이 상호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 제89조의2가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안 제89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는 ‘제조업자등’으로 변경하고 있어 일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있어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를 모두 “제조업자등”으로 약칭하고 있는 현행법 제89조를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의약품 판매업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상 지위 승계 신고 서식(별지 제31호)을 통해 양도인의 최근 1년 내 행정 처분 이력을 양수인에게 고지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조·확인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현행 제도 내에서 정보 불균형 해소 등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함.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시에도 이와 유사한 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의 양수인이 보다 행정제재처분내역,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내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4

【참고】	지위승계신고서 서식
-------------	-------------------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4. 11. 7.>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승계를 받는 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영업소의 명칭(상호)	승계 전		승계 후	
승계 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 기타()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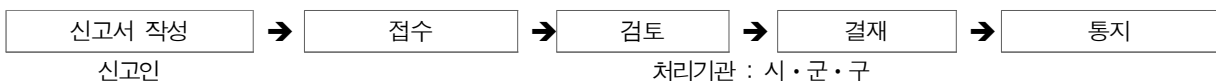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 1부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처리기관 :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약사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 양도·양수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 서식)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4. 10. 18.>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상호	승계 전	승계 후	
승계 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 기타()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7.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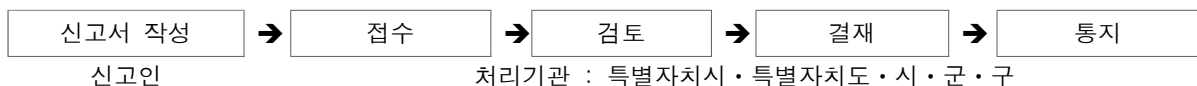
- [] 1. 본인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 의약품 제조업자등 지위승계신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1. 3. 8.>

제조업자 등 지위 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제조업자 등	명칭 (상호)	승계 전	승계 후
	영업의 종류	☐ 의약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 위탁제조판매업 ☐ 품목허가(신고) ☐ 임상시험실시기관 ☐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 비임상시험실시기관 ☐ 품질검사기관 ☐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소재지		
	의약품 등 제품명	승계 전	승계 후

승계 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 기타()
-------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허가증, 지정서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1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합니다)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약사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약사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약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별표 8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